

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2차 시행공지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을 기업에게는 고용안정과 장기재직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2차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6. 16.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 신규모집 : 294명 ※ 자진포기 등 총원인원 대비 모집인원 약 20% 예비 선발(60명)
- 신청기간 : 2025. 7. 1.(09:00) ~ 2025. 7. 15.(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기업 + 근로자)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https://double.gwwell.kr/youth>)
- 선정자 발표 : 2025. 7월 중
 - 강원특별자치도 · 시군 및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 게시
- 지원대상
 - (근로자) : 도내 거주 및 기업에서 근로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18세 ~ 45세 이하)
 - ※ 근로자 출생년도 : 1980년 ~ 2007년 출생자
 - (기 업) : 도내 기업(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 (근로자) 중앙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기참가자 또는 참가중인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차·유형·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등
-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해당하는 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임금체불 사업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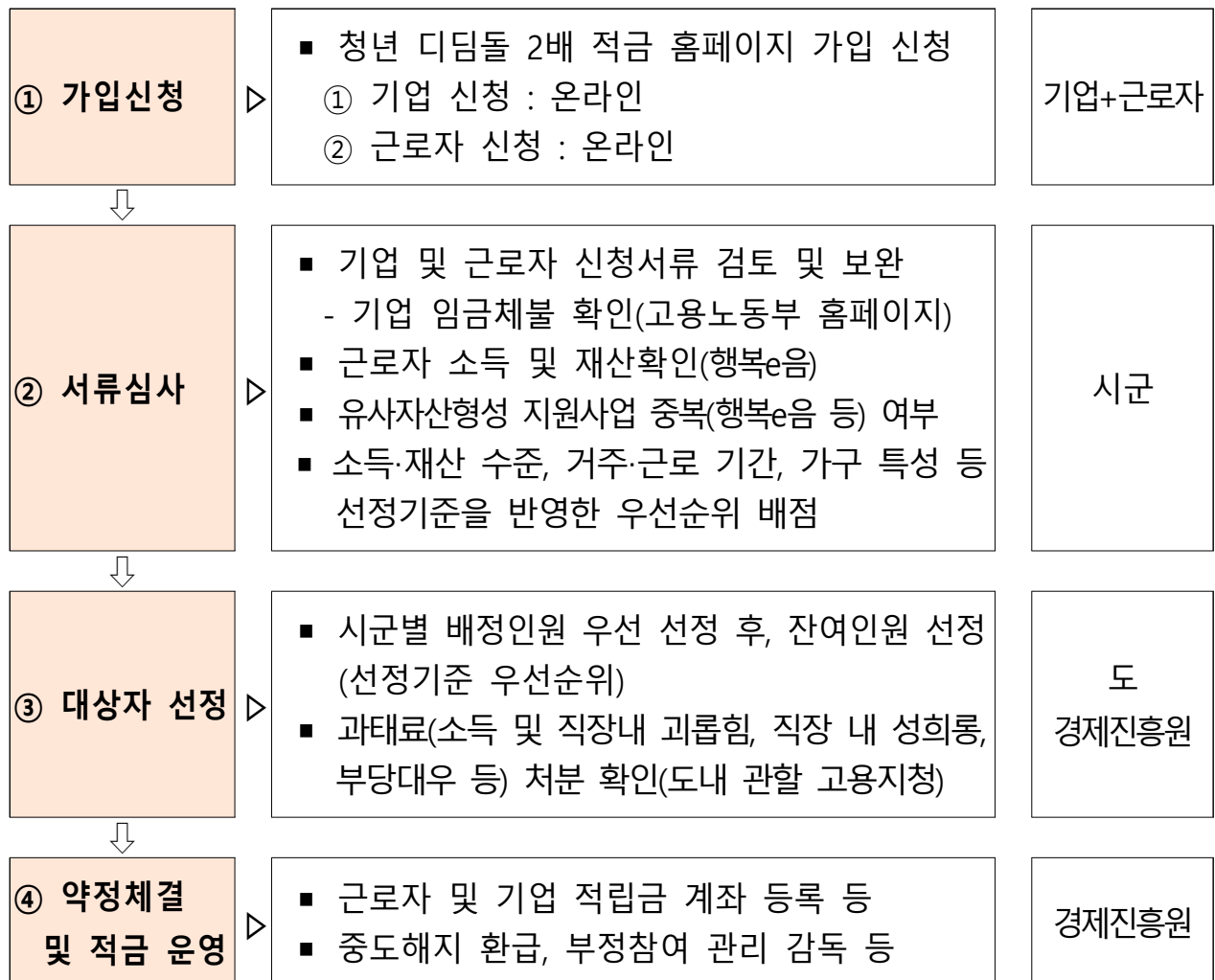
- 선정방법 : 소득, 재산, 거주기간, 근로기간, 가구원수 등 우선순위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적립금 매칭, 금융교육

구분	매월 적립금(20만원)				⇒	적립금
	청년	기업	도	시군		
금액	10만원	5만원	2.5만원	2.5만원		36개월(3년)
비율	50	25	12.5	12.5		720만원+이자

※ 2023~2024년 가입자는 만기까지 기존 기준 적용(청년 근로자 10+도·시군 10)

□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② 금융교육(필수)

- 적립기간 중 연 1회 정해진 금융교육 반드시 이수
- 도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재무상담을 받은 경우 금융교육 이수한 것으로 함
 - 교육이수 후 증빙서류(수료증, 이수확인서 등)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에 등록
- 교육 횟수

적립기간	이수횟수	도·시군 지원금
36개월(3년)	3회	• 연 1회(총3회) 미 이수한 경우 지원금 미지급 ※ 근로자 본인 사망 제외

□ 세부 추진내용

① 가입신청 : 기업 신청 → 시군 [기업심사 완료 → 근로자 신청]

① 기업 : 온라인 신청

- 도내 소재(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기준)하고 있는 기업 (정상운영 중인 기업) ※ 비영리법인 제외
- 제외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해당하는 기업
 -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가입 제한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대우 등을 처분받은 기업
 - ※ 사용자(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를 하였거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아 최근 2년('24~'25년)간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 휴·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② 근로자 : 온라인 신청

-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주민등록 기준) 및 기업에서 근로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18~45세 이하)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50%	3,588,020	5,898,987	7,538,030	9,146,660	10,662,288	12,097,208	13,482,64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2024.8.1.)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필수 포함
(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 약정체결 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3년이상(근로계약 체결 등)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제외대상

- 중앙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기참가자 또는 참가중인자
※ 중도해지자중 지원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지 자 체) 강원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기초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춘천, 원주, 삼척, 홍천, 횡성, 철원 등), 강원지역 외(타시도) 자산형성지원 사업 등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휴직자(육아, 질병 등)도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가입자는 제외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로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혹·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의 종사자 등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③ 제출서류

○ 기업 및 근로자 자격검토 증빙서류

※ 공고일 포함 이후 또는 제출서류 유효기간내 발급분만 유효

< 기업 >

1. 참가신청서(신청시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기업 및 대표자용)(신청시 온라인 작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공장등록증명서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5. 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 서식 1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지원대상 근로자 확인용)

< 근로자 >

1. 자가진단표(신청시 온라인 작성)
2. 참가신청서(신청시 온라인 작성)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본인) (신청시 온라인 작성)
4.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5.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
7. 근로계약서(정규직 등 확인용)
8. 가구특성 증빙서류(해당시) : 장애인, 보호종료 청년, 국가보훈, 다문화
9. (해당시)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 서식 2 ※ 가구원 소득 확인

② 서류심사

○ 자격검토

○ 선정기준(소득·재산 수준, 거주·근로 기간, 가구 특성) 점수 배점

- 신청자(근로자, 기업) 지원대상 자격(도내 거주, 임금채불 등) 적합여부
- 서류가 미비한 경우(서류 미첨부, 유효기간 초과 등) 보완조치
- 소득 및 재산 확인,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 중복 여부 확인
- 직장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을 처분받은 기업 제외 등

③ 대상자 선정

○ 선정자 발표 : 2025. 7월 중

- 강원특별자치도·시군 및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 게시

④ 약정체결 및 적립금 운영

○ 약정체결(온라인), 근로자 및 기업 적립계좌 별도 개설

- (약정내용) 근로자 의무, 계좌개설 및 저축방법 등
- 근로자 및 기업이 협력은행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동이체 등록

○ (저축방법) 매월 근로자 + 기업 적립계좌로 이체, 지원금은 익월 매칭 (시스템 확인)

- 적립기간(36개월) 중 총 5회 이상 미납시(근로자 + 기업 합산) 중도해지
※ 예시) 근로자 3회 + 기업 2회 = 총 5회 → 중도해지
- 근로자 또는 기업에서 적립금 미납시 해당월은 지원금 미매칭

구분	근로자	기업	처리 방법
납입여부	○	○	지원금 매칭
	x	○	지원금 미매칭
	○	x	
	x	x	

○ (약정취소) 근로자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약정 취소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적립금을 1회 이상 납부한 경우는 중도해지 처리

○ (충원) 2025년 신규 가입자가 2025년내에 약정취소, 중도해지 등 결원 발생시 예비순위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충원(분기별)

- 충원대상자 지원자격(도내 거주, 도내 기업 근로중, 소득기준충족) 적합시 약정체결

○ (중도해지) 근로자 또는 기업의 귀책사유별로 인해 중도해지 되는 경우, 지원금 및 이자 차등 지급

-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지시 : 근로자 적립금 + 이자(근로자 적립금) 지급

※ 근로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시 기업적립금(이자 포함)은 기업으로 반환

< 근로자 귀책사유 >

- 창업, 이직, 학업 등 근로자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 적립기간 중 총 5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로서, 근로자의 미납횟수가 기업보다 더 많거나, 기업과 동일한 경우

- 예시) 근로자 3회(또는 4회) + 기업 2회(또는 1회) → 중도해지 : 근로자 귀책
근로자 2회(또는 1회) + 기업 3회(또는 4회) → 중도해지 : 기업 귀책
근로자 3회 + 기업 3회 → 중도해지 : 근로자 · 기업 공동 귀책(근로자 적립금(이자)
→ 근로자, 기업 적립금(이자) → 기업)

※ 적립 일시중지 기간은 제외됨

- 가입기간 중 강원특별자치도 외 다른 지역으로 직장 또는 주소지(주민등록 기준)를 옮긴 경우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 전출 후 1개월 이내 강원특별자치도 재전입 시 제외(1회에 한함)

- 적립기간 중 병역의무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자격 부적격 또는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공고문 기준)
- 근로자 선정당시 소득·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 제출 서류의 허위가 있는 경우
- 적립금에 대한 압류 등 권리하자(침해)가 발생한 경우
- 연 1회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기업 대표 취임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에 중복 가입한 경우
- 기타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행기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

- (특별중도해지) 근로자가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한 해지시 :
근로자 적립금 + 기업 적립금 + 지원금 + 이자(근로자 + 기업) 지급

< 특별중도해지 사유 >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민법」에 따른 상속인 명의계좌로 지급,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 근로자의 경우 「민법」에 따라 처리
- 적립기간 중 임신·출산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기업) 귀책사유로 해지시 : 근로자 적립금 + 기업 적립금 + 지원금
+ 이자(근로자 적립금 + 기업 적립금) 지급

< 기업 귀책사유 >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기업 측에 의한 근로자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당한 임금조정,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대우 등으로 불공정한 계약 파기
- 적립기간 중 총 5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업의 미납횟수가 근로자보다 더 많은 경우
- 부정수급(기업이 부담해야 할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경우 등)
- 타시도로 사업장 이전(사업자등록증 기준)

- (적립 일시중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적립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적립기간중 1회 가능)
※ 근로자는 적립을 중지 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미납금 일시납 및 기간연장 불가

< 중도해지 귀책사유별 적립금 반환 요약 >

귀책사유	적립금			이자	
	근로자	기업	지원금	근로자	기업
근로자	○			○	
특별중도해지	○	○	○	○	○
기업	○	○	○	○	○
근로자+기업	근로자 적립금(이자) → 근로자, 기업 적립금(이자) → 기업				

※ 근로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시 기업적립금(이자 포함)은 기업으로 반환

- (재가입)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중도해지 이후 6개월 이내에 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가입요건에 적합한 기업에 재취업한(동일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 경우(1회에 한함) 신청가능
 - 중도해지시 기존 적립기간이 36개월 중 1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가능
 - ※ 예시) 가입후 23개월 적립 → 중도해지(기업 귀책사유) → 5개월 후 재취업 (다른 기업) → 재가입 신청
 - 재가입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약정체결(기업+근로자) 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함(36개월)
 - ※ 중도해지 환급금 중 도·시·군 지원금은 전액 반환(반환후 재가입 가능)
- (만기해지) 지급조건 확인 후, 지원금을 포함한 적립금 지급
 - 적립기간중 근로기간, 교육이수(연 1회) 등 확인
 - 지원금은 월 5만 원 × 인정회차(최대 36개월) 지급(최대 180만 원)
 - 이자는 근로자 + 기업 적립금에 대한 이자 지급
 - ※ 지원금 적립금 발생이자 반납(경제진흥원 → 도)

5 상담문의

- 사업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 ☎033-249-2778
- 신청문의 : 시·군 업무담당부서 : 붙임1
- 약정체결 및 적립금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256-3274

붙임 1**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시군담당부서**

시군	부서명	팀명	행정번호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250-4434
원주시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	737-2308
강릉시	경제진흥과	청년정책팀	640-5577
동해시	경제과	청년지원팀	530-2298
태백시	경제과	청년정책팀	550-7292
속초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팀	639-1542
삼척시	경제과	청년지원팀	570-3365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430-2897
횡성군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	340-2030
영월군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정책팀	370-2723
평창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330-2467
정선군	경제과	일자리팀	560-2150
철원군	경제진흥과	일자리팀	450-4934
화천군	지역경제과	일자리팀	440-2354
양구군	경제체육과	일자리지원팀	480-7131
인제군	경제산업과	일자리지원팀	460-4410
고성군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680-3667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경제일자리팀	670-2289

붙임2**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관련 서식**

서식	서 식 명	비 고
1	가족관계증명서 대체 서식(해당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기업용)
2	(가구원)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해당시)	가구원 (근로자용)

가족관계증명서 대체 서식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만 작성)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공제 계약 신청 근로자 명단

번호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위	서명
1	홍길동	1999.01.01.	○○팀	대리	자필서명
2					
3					
4					
5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공제 계약과 관련, 본 기업의 대표자는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기업의 대표자 및 근로자는 “위 계약(청약) 신청 근로자가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상호명)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작성*

대표자 성명 : (법인인감 날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필서명 가능

※ 대표자가 여러명일 경우, 모두 기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운영기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가구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1.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 지급서비스 제공 및 확인조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인적정보 및 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운영기간 동안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최소 5년) ※ 정보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고, 다만 거부할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사업 참가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상기 목적과 보유기간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수집한 위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상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위 보유기간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아래 제3자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제3자 : 강원특별자치도 및 사군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행기관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협력은행 등								
부양의무자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운영기관장) 귀하								